

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623
------	------

2017. 2. 22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2월 6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7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】
 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2.22)상정, 제안설명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)

1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·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양질의 중소기업제품 입점업체 선정 및 마케팅·홍보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17. 7월 ~ 2020. 6월) 예정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(안) : 없음.
 - ※ 판매수수료(매출액의 일정비율) 납부 :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→ 관리·운영 수탁기관

나. 주요 위탁사무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시설 관리 및 입점업체 선정·관리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활성화
- 기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·발전을 위해 유통관련 전문기관의 노하우 및 역량 필요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험과 역량이 있는 풍부한 전문기관에게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,

나. 전시판매장의 추진 배경

- 서울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(이하 ‘농협’)와 1995년 5월에 ‘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협정’(이하 ‘운영협정’)을 체결하여 농협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(10,184.8㎡, 3,081평), 농협은 서울시의 부지와 농협 소유의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창동유통센터를 건립하였음.

<창동유통센터 개요>

- 위 치 : 도봉구 창동 1-10, 11, 15(’98.5.1 개점)
- 규 모 : 부지 34,019㎡, 지하1층 지상3층
※ 서울시 소유(창동 1-10, 10,184.8㎡, 부지면적의 약30%)
- 주요용도 : 농수산물 판매장 (12,729㎡), 중소기업판매장 등(4,279㎡)

- 운영협정에 따라 서울시는 농협으로부터 서울시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금(이익금의 16.5%)을 지급받고, 부가적으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(이하 ‘전시판매장’)을 무상 제공받게 되었음.

<협정서 주요내용>

- 서울시 : 물류센터 부지의 **토지 10,185㎡(3,081평) 현물출자**하고 농협에서 사용
- 농 협 : **전시판매장 등 4,297㎡(1,300평)**을 서울시에 **무상으로 제공**
서울시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금(16.5%)를 지급

- 서울시는 전시판매장의 관리·운영을 1998년 7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였으나 서울산업진흥원은 7년간 직접 운영하다 2006년 1월 이후 농협에 재위탁하여 간접위탁 방식(서울시→서울산업진흥원→농협)으로 전시판매장이 운영되어 왔음.

- 한편, 시의회에서 운영협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서울시는 이익배당금 방식을 임대료 지급 방식으로 운영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농협에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농협이 거부함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 1월 24일에 운영협정서의 해지를 통보하였음.

<시의회 지적사항('13.4)>

'95년 운영협정서 체결 후 당초 목적대로 물류센타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소매업 위주의 하나로마트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협정 위반이며 이익배당금이 아닌 일반임대료를 부과해야 함

- 하지만 농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“계약 당사자 지위 확인”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서울시의 운영협정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와 농협은 운영협정에 의한 계약관계에 있음을 판시하였음.
 - 법원은 1심('15. 4. 21)과 2심('15. 8. 28)에서 모두 농협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서울시는 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결과가 확정되었음('15. 9. 15)

【판결문】 원고와 피고사이에 1995. 5. 26 체결된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존속함을 확인한다.

-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다시 농협으로부터 전시판매장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려는 것임.

다. 전시판매장의 운영 현황

-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되던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서울시가 운영협정을 해지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농협이 서울시의 사용수익 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음.
 - 농협은 입점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서울시에게 사용료(15년 5억 3천만원, 16년 5억 5천만원)와 판로지원금(15년 4,255만원, 16년 납부예정)을 매년 지급하고 있음.
- 현재 전시판매장에는 침구류, 소형가전, 애견용품, 자동차용품, 잡화 등 여러 분야의 업체 33개가 입점 중이며 2016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약 46억원 9천만원 정도이며 업체별 매출액은 최대 7억 4천만원(다이소아성산업)에서 574만원(삼성요업)까지 다소 격차가 있음(업체별 현황은 첨부자료 2 참고)

<최근 3년간 전시판매장의 매출 현황>

연도	2014년	2015년	2016년
매출액 (VAT제외)	47억 9,400만원	48억 3,600만원	46억 9,600만원

- 서울시와 농협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농협은 중소기업제품이 80%이상 전시·판매되도록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매출액 1%(서울시 판로지원금 0.8%, 농협 광고홍보비 0.2%)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.

<계약서 관련 내용>

제7조(준수사항) “을(농협)”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 가.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80%이상 전시·판매되도록 입점업체를 선정한다.
 다. 연간 매출액의 1%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투자하여야 하며, 이중 80%는 “갑(서울시)”이 판로지원금으로 20%는 “을(농협)”이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광고홍보비로 집행한다.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목적이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적인 판매장의 운영과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그러나 통상적으로 판로지원 사업들이 주로 제조업 등 생산기업들을 위주로 입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시판매장에는 유통기업들이 다수 입점하여 수입 제품과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.
 - 현재 전시판매장에는 유통기업(다이소아성산업)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등 입점기업과 판매제품의 선정에 있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함.
- 무엇보다 전시판매장이 하나로마트의 판매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시판매장의 매장들이 하나로마트의 매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시판매장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.
 - 건물안내와 전시판매장 주변에도 전시판매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표기가 없음.

라. 민간위탁의 타당성
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1)에서 중소기업지원시설로 ‘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’을 명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판매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1)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서울신기술창업센터 | 2. 삭제 <2005.4.14.> |
| 3. 삭제 <2005.4.14.> | 4.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|
| 5. ~ 10. (생략) | |

- 서울시의 ‘중소기업전시판매장 민간위탁 추진계획’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전시판매장의 시설 관리와 입점업체의 선정 그리고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·홍보 등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들을 담당하게 됨.
- 현재 중소기업의 효율적 판로지원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전시판매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전시판매장의 차별성 확보 방안과 입점기업·제품의 선정 등 판매전시장의 운영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- 따라서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서울시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서울시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수탁기관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의 사용요율을 4.3%에서 1%로 인하시킬 예정임.
 - 사용요율의 인하로 수익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 등 공익성을 가진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.
-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수준이 수탁기관의 역량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.
- 또한 농협이 아닌 다른 민간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다면 농협의 사용공간과 혼재되어 있는 전시판매장의 구조와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판매품목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.
- 아울러,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타 전시판매장의 성공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 추진으로 과거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의 틀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2월 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·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양질의 중소기업제품 입점업체 선정 및 마케팅·홍보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17. 7월 ~ 2020. 6월) 예정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(안) : 없음.

※ 판매수수료(매출액의 일정비율) 납부 :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→ 관리·운영 수탁기관

나. 주요 위탁사무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시설 관리 및 입점업체 선정·관리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활성화
- 기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·발전을 위해 유통관련 전문기관의 노하우 및 역량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4.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 홍기석(☎2133-5241)